

국가직무능력표준 고시

[시행 2024. 12. 4.] [고용노동부고시 제2024-62호, 2024. 12. 4., 일부개정]



고용노동부(직업능력평가과), 044-202-7296

국가직무능력표준은 별표와 같다.

부칙 <제2024-62호,2024.12.4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검토기한)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